

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
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이규선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9. 30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
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398호로 2024년 9월 13일 이규선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인터넷, SNS 등의 발달로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10~20대 등 저연령층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. 이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피해 방지에 기여가 큰 구민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마약류 예방사업에 실효성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(안 제10조)

나. 포상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09.19.~2024.09.24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, 법인,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,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5조(실태조사)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.
 - 안 제10조(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)에서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함.
 - 안 제11조(포상)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, 법인,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난 '22년 12월 22일 제정된 바 있음.
- 이번 개정안은 ▲효율적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신설 ▲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관련 사업 시행 ▲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기여한 공로자·법인·단체에 대한 포상 관련 내용을 담고 있음.
- 실태조사 관련, 관계법령인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마약류관리법”이라 한다)제51조의4(실태조사)1)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,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²⁾은 마약류 물질에 대한 인지도, 경험·인식, 사용 동기 등으로 포괄적인 항목³⁾으로 조사하고 있기에 우리 구(區) 차원에서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. 아울러, 마약류는 시도만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이기에 응답자의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관련기관·단체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합리적으로 여겨짐.

1) 제51조의4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·중독·확산 및 예방·치료·재활·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
2)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약류 관련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화된 예방 교육·홍보, 효과적인 사회재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「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」를 실시한 바 있음.

3) 「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」 조사 개요

- 다음으로 ‘세계마약퇴치의 날(매년 6월 26일) 행사’ 및 ‘포상’ 조문의 신설 관련, 관계법령인 「마약류관리법」 제51조의3제2항4)(마약퇴치의 날)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, 본 개정안에서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기에 문제는 없어 보이며, 동법 시행령 제20조의55)(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)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 퇴치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에 포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됨.

- 조사명 : 마약류 피해인식 실태조사
- 조사대상 : 성인(만19~59세) 3,000명, 청소년(만14~18세) 2,000명
95% 신뢰수준에서 성인 $\pm 1.79\%$, 청소년 $\pm 2.19\%$
- 조사내용 :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, 신념, 지식, 경험 등에 대한 피해인식 실태조사
- 조사방법 : 온라인 설문(불임1, 성·연령·지역별 비례할당추출법)

- 4) 제51조의3(마약퇴치의 날)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·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5) 제20조의5(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참 고 자 료

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제51조의3(마약퇴치의 날)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·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1조의4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·중독·확산 및 예방·치료·재활·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
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0조의5(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